

국공립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관련 협조 요청

- ◆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한이 '21.12.31 종료될 예정(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21년 7~11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기한 또한 '22.3.10.에 종료될 예정임
- ◆ 따라서 고용보험 미신고, 고용보험료 미납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주인 교육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관리에 대해 재차 협조를 요청 드림

1 적용 대상

1 방과후학교 강사

-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과정 담당 강사(초·중등 과정만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1)
 - * '방과후학교' 과정의 범위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로 문의 요청
- (소득)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
 - * 같은 시·도 교육청 소속인 복수의 공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므로, 동일 시·도 교육청내 각 학교에서 지급받는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연령) 만 65세 미만(다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단절없이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2 사업주

-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 * 강사가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적법한 집행권한이 있는 자인 교육감이 사업주가 됨

2 고용보험 관련 신고 주체 및 내용

1 신고 의무자 : 시·도 교육감

- 원칙적으로 공립학교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주는 “교육감”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이 고용보험관계를 성립하고, 특정 강사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 등 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수행
- 다만, 공립학교의 경우 한 시·도 교육청내 대상 학교가 다수이고, 그간의 고용보험 신고관행 및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외한 고용보험 신고가 각 학교별로도 가능토록 조치

② 보험관계 성립 신고: 시·도 교육청

- 각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별도로 직접 2022.1.14.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 신고(최초 1회)

* 2021.12월 현재 세종시 교육청만 신고 상태

** 근로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노무제공자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 신고 필요

③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취득·상실: 각급 학교

- 사유 발생 시(방과후학교 계약 시작 또는 종료시) 그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최초 1회)

- 이 경우, 학교별 실제 지급 보수액과 상관없이 해당 계약의 개시 및 종료시 각각 신고해야 함

* 특정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보수액이 고용보험 적용요건(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 후 직권으로 취득·상실 처리 예정

③ 월보수액 통보: 각급 학교

- 학교별 실제 지급 보수액과 상관없이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보수액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 통보해야 함

④ 고용보험료 납부: 각급 학교

- 납부가 유예된 '21.7~11월분 고용보험료는 '22.3.10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건강보험공단에서 '22.2.25까지 각 학교로 고지서 송부 예정)

- '22.1월분 보험료부터는 매월 사회보험 고지·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

* 참고로 '22.1월분 보험료는 '22.4.10.까지 납부('22.3.25 고지 예정)

③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방과후학교 강사 본인 신청사항)

- '22.1.1.부터 한 사업주에게서 받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방과후학교 강사인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로 다른 노무제공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4. 고용보험 신고 등 관련 교육

- 12월 중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줌(ZOOM) 방식 온라인 교육 2회 예정

* (일자) 12.29.(수) 14시~15시, 12.30.(목) 14~15시(교육시작 30분 전부터 접속가능)
(대상)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
(참여방법) 표시이름을 "참석기관(참석자명)"으로 변경하고 (회의 ID) 286 327 5213 (비밀번호) welco1111 입력

참고 1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관할 및 연락처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및 사용 방식, 신고 문의, 사업장 성립 여부,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

서울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번호	02-6946-0500			
	팩스번호	1부	0502-223-3102	3부	0502-223-1204
2부		0502-223-1203	예술인 가입부	0502-223-3203	
경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제외))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번호	032-712-0500			
	팩스번호	1부	0502-451-1102	2부	0502-451-1103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번호	051-790-0300			
	팩스번호	1부	0502-661-1102	2부	0502-661-1103
대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번호	042-718-0600			
	팩스번호	1부	0502-870-1102	2부	0502-870-1103

참고 2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관련 신고 안내

- (온라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 '사업장' 선택 → 로그인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탭을 클릭하여 신고
- (오프라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팩스로 접수(연락처 참조)

* 일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송부 시 이관 등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팩스 물량이 많을 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

참고 3**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 안내**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보험관계의 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참고 4**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서식**

- 첨부된 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별지 제5호의2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별지 제6호의2),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통보서(별지 제22호의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7. 1.>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기업정보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업종)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신청시 괄호에 체크)
-------------	---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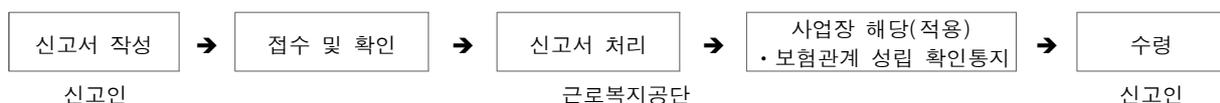
작성방법

공통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가 해당되며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고용 보험	<p>※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p>※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에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함)								
공통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월(평균)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 * 참조하여 번호 기재	
1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 직종별 추가 입력 번호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자전거·지하철 ⑤기타							
	화물차주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지게차 ⑤ 스크레이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안정기 ⑪ 콘크리트베틱 플랜트 ⑫ 콘크리트피니셔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믹싱플랜트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 기 ⑲ 쇄석기 ⑳ 공기압축기 ㉑ 천공기 ㉒ 향타 및 향발기 ㉓ 자갈채취기 ㉔ 준설선 ㉕ 특수건설기계 ㉖ 타워크레인 ㉗ 콘크리트믹서트럭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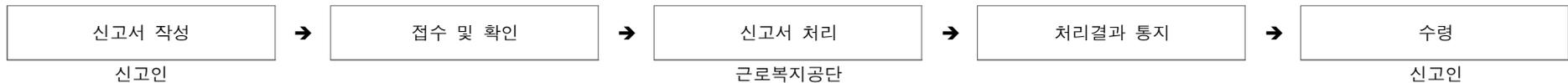
작성 방법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아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가입자(노무제공자, 예술인)의 취득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4. 월(평균)보수액란에는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액”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직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2. 방문판매원 입직유형 란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란은 직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란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앞쪽 하단에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1 방과후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957 퀵서비스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8 대리운전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처리 절차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3. “예술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상실일이 속하는 월(이하 “상실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상실월의 직전월(이하 “상실전월”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적습니다. ※ 상실월 및 상실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div>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직일” 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이직사유” 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킷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 없음” 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